

## 사례를 통한 미반덤핑법상 상품의 범위에 관한 연구

Study concerning the Scope of Merchandise under the U.S. Antidumping Law through Case

하충룡(Choong-Lyong Ha)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 부교수

한나희(Na-Hee Han)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후 연구생

###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미국 반덤핑법의 일반론적 고찰        | 참고문헌     |
| III. 연방대법원 사례분석(Eurodif 사건) | Abstract |
| IV. 미국반덤핑법 적용을 위한 상품의 범위    |          |

### Abstract

“Dumping” describes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price discrimination whereby a producer or exporter sells merchandise in an export market at less than fair value. The U.S. antidumping statutory framework is embodied in the Tariff Act of 1930. The Act states that “dumping” refers to the sale or likely sale of goods at less than fair value. 19 U.S.C. § 1677(34).

The Commerce Department and the Commission are jointly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the antidumping law. Commerce determines whether foreign merchandise is being sold in the United States at less than fair value, and the Commission determines whether a domestic industry producing a product like the imported merchandise has been materially injured or threatened with material injury by reason of imports of that product.

Recently, in U.S. v. Eurodif, the Supreme Court held the question whether the Commerce can reasonably determine that foreign merchandise has been sold within the meaning of the antidumping law in U.S.. Should 19 U.S.C. Section 1673, which calls for “antidumping” duties on foreign goods, but not services, that sell at less than fair value in the U.S., apply to imported low enriched uranium? Yes. In a unanimous opinion written by Justice David H. Soute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Commerce Department's view of imported low enriched uranium, as the sale of goods rather than services, was permissible. It reasoned that, since 19 U.S.C. Section 1673 did not specify whether it applied to the production of low enriched uranium, it was left to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Commerce Department to determine. Accordingly, the Court found the Commerce Department interpreted the statute reasonably.

Key Words : U.S. v. Eurodif, the Application of U.S. Antidumping, 19 U.S.C. § 1673,  
the Scope of Merchandise

## I. 서 론

미국반덤핑법이 존속해온 이래, 처음으로 미국연방대법원(Supreme Court)에서 반덤핑법의 적용에 대한 판결이 최근에 내려졌다.<sup>1)</sup> 해당 사례는 후술하겠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미국 반덤핑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내용과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상품”의 해석이 쟁점이다.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불공정하게 판매된 외국상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sup>2)</sup> 즉, 상품인지 여부가 반덤핑법을 적용하기 위한 일차적 기준이 된다.

특히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통상정책과 그에 바탕을 둔 통상법은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sup>3)</sup> 미국통상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sup>4)</sup>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생산조직과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 등 저비용 생산기지로의 이동은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이는 미국 통상법의 적용에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이어 지고 있다.<sup>5)</sup>

미국통상법의 불공정 무역규제 중 많은 논란이 되는 “덤핑(Dumping)”은 불공정 무역관행의 하나로, 수입국에서 특정상품이 수출국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행위를 일컫는다.<sup>6)</sup>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덤핑을 국가 간 가격차별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반덤핑 관세는 이러한 국

1) *United States v. Eurodif*, 129 S.Ct. 878, (U.S. 2009).; Sidley Austin LLP, “Supreme Court to Hear Antidumping Case”, *International Trade Update*, April 21, 2008, p.1.; Committee Reports, “Report of The Nuclear Regulation Committee”, *Energy Law Journal*, 29 ENERGYLJ 789, 2008, p.792.

2) 19 U.S.C. § 1673., 관세법 제51조.

3) 윤충원,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집문당, 2006.11, p.21.; 예를 들어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 조사신청 및 조치 현황(’87~’09.1) 따르면, 무역구제 조사신청건수는 총 499건(279건)이며,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이 국가별로 189건(102건)(품목별로 105건(64건))이며, 상계관세가 1건(없음), 셰이프가드가 33건(22건), 불공정무역행위가 273건(88건), 무역피해심의회가 3건(3건)이다. 특히, 반덤핑 규제(189건)의 경우 국가별로는 중국이 45건, 일본 35건, 미국 22건, EU 22건, 대만 10건 등, 산업별로는 화학 57건, 섬유 24건, 철강금속류 21건, 제지류 20건, 전기전자 10건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 )안은 구제조치 건수). [www.ktc.go.kr](http://www.ktc.go.kr) 2009년 2월 25일 접속.; 한-미간 교역에 있어 대미수출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반덤핑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석, “한국기업이 유념하여야 할 미국 반덤핑이슈에 대한 고찰”, 무역위원회, 2007.4, p.1. <http://ktc.go.kr> 참조.

4) 대표적으로, 김기영, “通商의 국내적 규제와 司法審査 - 美國國際貿易法院의 반덤핑관할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관할권문제의 性格과 意義 -”, 「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005.12.; 김석우, “한미 통상마찰 연구”,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12.; 권영민, 「미국의 보호주의 통상제도에 대한 비판 :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5.10.; 박경환, “미국의 移轉價格策定과 덤핑決定價格算定에 관한 比較研究”,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2005.6.; 손태우, “WTO 체제하의 미국 상계관세적용 방법론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8.; 신창섭, “미국 반덤핑법의 WTO 내국민대우원칙의 위반 여하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학회, 2000.; 이시영 외1명, “미국의 한국수출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제통상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2001.; 전정기 외1명, “미국 반덤핑제도 운용의 불공정성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1999.11. 등이 있다.

5) 채훈 외, 「각국 무역구제제도의 현재와 미래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무역투자연구원, 2007.7, p.102. 최근 미국의 반덤핑 사례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United States v. Eurodif* 사건에서 생산과정의 분할이 완제품 수입에 대한 반덤핑 법규적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6) Restatement Third of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 806 cmt. a (1987), *REST 3d FOREL s 806*.

제가격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내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그러므로 반덤핑법이 엄밀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상품을 덤핑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기 보다는 시장의 경쟁조건을 동등하게 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sup>7)</sup>

덤핑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제VI조에서 ‘어느 일국의 제품이 (그 국내시장에서의) 당해제품의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국가의 상권 내에 반입되는 것’이라고 덤핑을 규정하고 있으며,<sup>8)</sup> 이는 ‘GATT 1994’ 제VI조에서 그대로 수용되었다. 이후,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채택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협정의 부속 문서 중 하나인 ‘GATT 1994 제V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한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 있어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해당상품은 덤핑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9)</sup>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덤핑을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0)</sup> 미국관세법도 ‘덤핑을 특정 종류의 외국상품이 미국 내에서 공정가격 미만으로 판매되거나 판매될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1)</sup> 다시 말해, 미국의 반덤핑법은 불공정한 외국의 경쟁자에 의하여 국내산업을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sup>12)</sup> 일반적인 덤핑의 정의와 맥락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국반덤핑법의 적용을 위하여 중요한 개념인 “상품”(merchandise)에 대하여, 우리와는<sup>13)</sup> 달리 반덤핑법 규정 어디에서도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령에 의거하여<sup>14)</sup> 가장 먼저 반덤핑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단계에 있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및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가 재량으로 이를 판단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1995년 WTO 체제로의 전환이후에도 WTO 반덤핑협정은 회원국간의 약속인 국제협정이긴 하지만 사인의 행위인 덤핑을 직접규제하지 않고, 실제 덤핑에

7) Daniel E. Feld,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Antidumping Act of 1921, preventing actual or threatened injury to domestic industry resulting from sale in United States of merchandise at prices lower than country of origin”, *American Law Reports ALR Federal*, 42 *A.L.R. Fed.* 821. 2009, §4.

8) GATT 1947 Article VI, ‘...that dumping, by which products of one country are introduced into the commerce of another country at less than the normal value of the products,...’

9)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 Article 2.1. ‘... if the export price of the product exported from one country to another is less than the comparable pric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for the like product when destined for consumption in the exporting country.’

10) 관세법 제51조.

11) 19 U.S.C. §§ 1673(1), 1677(34).

12) *NTN Bearing v. United States*, 127 F.3d 1061, at 1063 (1997); *Torrington v. United States*, 68 F.3d 1347, at 1352 (1995)

13) 대외무역법 제2조제2호. 물품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증권 및 채권을 화제한 서류외의 동산을 말한다.

14) 19 U.S.C. § 1673.

대해서는 수입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환언하면, 국내법이 덤핑을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수입국의 자의적 입법과 그 적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sup>15)</sup> 이는 각국 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의 과제 중 무역구제 분야의 핵심인 반덤핑분야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미국반덤핑법의 실제적·절차적 규정에 관한 기본구조 및 연구의 목표인 상품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외 논문 및 문헌,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을 전개하고자 한다. 제II장에서는 미국반덤핑법의 운용 및 관할을 비롯하여 해당법의 목적과 해석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연방대법원에서 다룬 최초의 반덤핑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제IV장에서는 미국반덤핑법의 적용기준 및 해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품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 본 후, 마지막 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 II. 미국 반덤핑법의 일반론적 고찰

### 1. 미국반덤핑법의 목적

미국 내에서 국제통상 분야를 규율하는 핵심 법률은 미국관세법 제19편으로 1930년 관세법 제4장을 일컫으며, 동 법은 미국 내 불공정무역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sup>16)</sup>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법으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이 있으며, 양법은 절차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도 매우 유사하다.<sup>17)</sup> 하지만 그 목적에 있어 반덤핑관세는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외국상품의 피해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상계관세법은 보조금으로 야기된 시장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 조치이다.<sup>18)</sup>

현행 미국반덤핑법은 미국 내에 덤핑된 상품의 관세부과 절차 및 실제규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다.<sup>19)</sup> 하지만 간략히 말해, 일반적으로 공정가격

15) 고준성 외,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6.12, pp.165-166.

16) 19 U.S.C. §§ 1001-1681.

17) Committee on Ways and Mean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VERVIEW AND COMPILATION OF U.S. TRADE STATUTES* Part II,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ne 2005, p.96.

18) *Al Tech v. United States*, 651 F. Supp. 1421, at 1429-1430 (1986).; Stephen Lease, *Customs Duties, Corpus Juris Secundum*, June 2008, 25 CJS CUSTOMSDUT §146.

이하로의 수입을 판매하는 행위를 “덤핑”이라고 하며,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공정가격 이하”의 수입에 공정가격과 수출가격 간의 차액만큼 부과된 관세를 “반덤핑”관세라 칭한다.<sup>20)</sup> 반덤핑관세는 덤핑된 상품, 즉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격이 수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다.<sup>21)</sup>

한 마디로 말해 미국반덤핑법을 “덤핑방지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적용에 있어서는 덤핑마진의 산정에 치우치기 보다는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sup>22)</sup> 미국반덤핑법은 미국시장으로 들어오는 적합한 수입품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 무역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구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sup>23)</sup> 반덤핑관세의 부과로 인한 반덤핑법의 구체효과는 수출업자들 반덤핑관세를 내거나, 해당관세를 수입업자에게 상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sup>24)</sup>

1921년 반덤핑법의 제정이래로 해당 법의 목적은 변하지 않고 있다.<sup>25)</sup> 기본적으로 미국 반덤핑법의 명백한 의도는 반덤핑관세를 통하여 외국 수출업자에게 벌금(penalty)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수출업자와 덤핑에 영향을 받은 국내산업 간의 경쟁조건을 동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sup>26)</sup> 즉 미국 반덤핑법의 주요 목적은 불공정하게 교역된 수입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sup>27)</sup>

의회에서도 반덤핑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반덤핑법의 범위를 강화하고 확장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첫 주요개정인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 의거한 반덤핑법이 그것이다.<sup>28)</sup> 이와 유사하게 이후 세 차례의 후속개정에서도 의회는 지속적으로 미국기업들

19) 19 U.S.C. §§ 1671-1677.; 고준성 외7명, 「미국통상법연구」, 법무부, 1996, p.299.; 윤충원,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집문당, 2006.11, p.524.

20) Stephen Lease, *op. cit.*, §145.

21) *Id.*; Cameron & Crawford, “An Overview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Amendments: A New Protectionism?”, 20 *LAW & POLY INTL BUS.* 471, 1989, p.472

22) Stephen Lease, *Id.*, §146.; *Federal-Mogul v. United States*, 63 F.3d 1572, at 1580 (1995).

23) *Nucor v. United States*, 414 F.3d 1331, at 1336-1337 (2005).

24) *Hoogovens v. United States*, 4 F. Supp. 2d 1213, at 1216-1217 (1998).

25) 1921년 반덤핑법은 1916년 반덤핑법의 적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 크게 수정되었는데, 특히 외국기업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의 구체조치를 명백히 하고, 입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재 미국 반덤핑법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54년, 1958년, 1968년, 1975년, 1979년에도 반덤핑법 개정을 하게 되나 해당 개념에는 변화가 없었다. 즉, 1921년 이래로 계속해서 반덤핑법의 개정이 있었으나 “외국 상품이 미국 내에서 판매 혹은 판매될 가능성(foreign merchandise is being, or is likely to be, sold in the United States)”라는 문구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덤핑법에 남아 있다. Pub. L. No. 83-768, § 301, 68 Stat. 1138 (1954); Pub. L. No. 85-630, Sec. 1, 72 Stat. 583, 585 (1958); Pub. L. No. 90-634, § 201, 82 Stat. 1347 (1968); Pub. L. No. 93-618, Sec. 321(a), 88 Stat. 2043 (1975); Pub. L. No. 96-39, Title I, § 101, 93 Stat. 162 (1979) 현재 19 U.S.C. § 1673.

26) *Chaparral v. United States*, 901 F.2d 1097, at 1103-1104 (1990); *C.J. Tower & Sons v. United States*, 71 F.2d 438, at 445-446 (1934); *Huayin Foreign Trade v. U.S.* 322 F. 3d 1369, at 1379 (2003).

27) *Koyo Seiko v. United States*, 20 F.3d 1156, at 1159 (1994).; *Kemira Fibers v. United States*, 61 F.3d 866, at 874 (1995).; *Hynix Semiconductor v. United States*, 424 F.3d 1363, at 1368 (2005). “The primary purpose of the antidumping statute is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against foreign manufacturers who sell at less than fair market value.”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항들로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9)</sup> 다시 말해, 미국 의회는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려는 외국의 생산자 및 수입자의 행위를 좀 더 강력히 규제하기 위하여 반덤핑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이다.<sup>30)</sup> 뿐만 아니라 반덤핑법이 본질적으로 형별적인 법률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이기 때문에<sup>31)</sup>, 더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sup>32)</sup>

## 2. 상무부의 해석기준

미국반덤핑법에 의거하여 동종의 외국 상품이 공정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되고, 해당 수입으로 인해 미국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덤핑이 성립하게 되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sup>33)</sup> 불공정하게 수입된 외국상품, 즉 서비스가 아닌 상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으나, 해당 법에서는 “상품(merchandise)”라는 법률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해석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용어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해석기준에 대하여 정립된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sup>34)</sup> 그러므로 반덤핑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인 상무부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결정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Chevron* 사례에서 연방대법원은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입법의를 따라야 하지만, 법원은 법령에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모호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결정이 법률 내에서 합리적인지 그리고, 자의적이지 않은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하였다.<sup>35)</sup> 의회가 명시적으로 행정기관에게 규정제정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한 위임입법

28) 19 U.S.C. § 2101, 88 Stat. 1978.;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ow the GATT Affects U.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Duty Policy*, The Congress of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Sept 1994, p.25.

29)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Trade and Tariff Act of 1984,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1988.; Congressional Budget Office, *Ibid*, p.27.

30) *ICC Indus., v. United States*, 812 F.2d 694, at 700 (1987).

31) *Chaparral*, 901 F.2d 1097, at 1101 (1990).; *Bethlehem v. United States*, 162 F. Supp. 2d 639, at 643 (2001).

32) *Bomont v. United States*, 550, 718 F. Supp. 958, at 962 (1989).

33) 19 U.S.C. § 1673.

34) Kristine Cordier Karnezis,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Chevron Deference’ to Administrative Action by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merican Law Reports ALR Federal 2d*, 3 *A.L.R. Fed. 2d* 25, 2009, §4.

35) 본 사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환경청의 *Chevron* 석유회사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조치와 관련하여 내린 판결로, 해당 판결은 행정기관의 재량의 범위에 관한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Chevron v. National Resources Defense Council*, 467 U.S 837, at 837-843 (1984).

이 자의적이거나 법률과 저촉되지 않는 한 합리적이라고 보고,<sup>36)</sup> 의회가 위임한 것이 명시적이지 않을 때는 법원이 독자적인 해석을 내리기 보다는 행정기관의 해석이 합리적인지 여부만을 검토하면 된다고 하였다.<sup>37)</sup> 환언하자면, 의회로부터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권한을 받은 행정기관은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충(gap filler)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sup>38)</sup>

또한 연방대법원은 *Chevron*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모호한 법령에 대한 행정기관의 해석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들은 명백하게 법령의 의미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sup>39)</sup> 즉, 행정기관의 해석은 법령의 의미와 명백히 충돌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sup>40)</sup> 한편 *Nat'l Cable & Telecomms*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전에 어떤 용어를 해석했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후에 모호한 법령에 대한 행정기관의 해석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게 해석된 용어는 이후의 법원판결들을 구속하지만, 법률상 모호하거나 부재하고 있는 용어는 사건을 처음 판단하는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남겨두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법원보다는 행정기관이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정치적 선택을 적절히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sup>41)</sup> 따라서 반덤핑법과 관련하여서 상무부는<sup>42)</sup> 법률용어가 모호한 경우에 해석재량을 갖는 반면, 법원 그러한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43)</sup>

결과적으로 *Chevron* 원칙에 의거하여 상무부의 해석이 반덤핑법에 적용될 수 있는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2단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먼저, 의회(Congress)가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의회의 의도가 명백하다면, 법원뿐만 아니라 상무부는 의회의 의도를 따라 해당사안은 종결된다. 다음으로, 의회가 침묵하거나 법이 모호한 경우에는 상무부의 해석이 반덤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및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sup>44)</sup>은 의회가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무부의 해석이 반덤핑

36) Kristine Cordier Kamezis, *op. cit.*, §11.

37) *Chevron*, 467 U.S. 837, at 844, (1984); *United States v. Mead*, 533 U.S. 218, 121 S. Ct. 2164, at 2165-2168 (2001).

38) *Chevron, Id.*, at 843 (1984).

39) Kristine Cordier Kamezis, *op. cit.*, §12.

40) *National R.R. Passenger v. Boston and Maine*, 503 U.S. 407, 112 S. Ct. 1394, at 1397 (1992).

41) *Chevron*, 467 U.S. 837, at 865-866. (1984); *Nat'l Cable & Telecomms. Ass'n.*, 545 U.S. 967, at 980-982 (2005).

42) 여기서 상무부가 반덤핑법의 보충역할을 한다는 것은 19 U.S.C. § 1673(1)에서 행정기관으로 명시, 19 U.S.C § 1677(1)에서 행정기관이 상무부(실제 법령에서는 상무부 장관이라고 하고 있으나 장관에 의하여 상무부 산하 국제통상관리실에서 반덤핑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총칭하였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행정기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받은 것은 상무부라고 할 수 있다.

43) *United States v. Cooper*, 312 U.S. 600, at 605 (1941).

44) Federal Courts Improvement Act of 1982에 의거하여 설치. Pub. L. No. 97-164, 96 Stat. 25.

법의 입법의도 및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3. 미국반덤핑법의 운용 및 관할

미국반덤핑법에 의거하여 상무부가 반덤핑관세명령을 발하기 전에, 상무부와 ITC는 공동으로 일련의 판정을 해야만 한다.<sup>45)</sup> 즉,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1) 상무부가 동종의 외국상품이 “공정가격(fair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될 것이라고 판정; (2) ITC가 당해 상품의 수입 또는 수입을 위한 상품의 판매(또는 판매될 것)에 의해 미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위협”에 처해 있거나, 또는 미국 “산업의 형성이 실질적으로 저해”된다고 판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sup>46)</sup> 이처럼 미국반덤핑법은 피해의 결정에 있어서는 ITC에 위임을 하고 있으며, 덤핑의 결정 및 이를 비롯한 그 밖의 반덤핑조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무부에 위임하고 있다.<sup>47)</sup>

반덤핑조사의 개시는 상무부의 직권 혹은 이해당사자의 조사신청으로 개시될 수 있으나 대다수의 덤핑사건은 국내생산자들로부터의 조사신청에 의해 개시된다.<sup>48)</sup> 상무부와 ITC는 반덤핑법에 의거하여 개별 조사를 하고 양 기관에서 최종 긍정판정을 하고 나면 상무부는 반덤핑관세명령을 발하게 되는 반면, 부정판정을 내릴 경우 조사신청은 각하되며 모든 반덤핑절차는 종료한다.<sup>49)</sup> 한편 상무부는 조사의 판정여부를 연방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sup>50)</sup>

상무부 및 ITC에서의 반덤핑판정이 종료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인 이해관계자는 최종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국제무역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sup>51)</sup>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 및 ITC의 최종판정에 대한 심리를 함에 있어 양 기관에서 다룬 증거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sup>52)</sup> 오히려 해당 판정이 실질적인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sup>53)</sup> 즉,

45) Mark A. Barnett, Sara Khan, Kathy B. Reif, Elizabeth Shryock, “28 U.S.C. § 1581(C)- Review By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of Antidumping &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s Issued By the Department of Commerce”,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0 *GEOJIL*153, Fall 2008, p.153. 미국의 반덤핑법의 운용은 일원론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원론적 방법을 택하고 있다. 즉 상무부와 ITC의 반덤핑조사과정은 조사신청 및 개시이후,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① ITC 예비조사, ② 상무부 예비조사, ③ 상무부 최종조사, ④ ITC 최종조사. 양 기관의 반덤핑 조사는 시간적으로 다소 중복이 있으나 실제로는 한 단계가 종료되고 나서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46) 19 U.S.C. § 1673.

47) Brink Lindsey and Dan Ikenson, “Antidumping 101; The Devilish Details of Unfair Trade Law”, *CATO Institute*, Nov. 2002, p.2.

48) 19 U.S.C. § 1673a(a),(b)

49) 19 U.S.C. § 1673a(c)(2),(3). 상무부가 긍정판정을 내린 경우는 미소마진(2% 미만의 덤핑마진)을 초과한 덤핑마진을 판정한 경우이고, 부정판정을 내린 경우는 0% 또는 미소마진인 덤핑마진을 판정한 경우이다.

50) 19 U.S.C. § 1673a(c)(1)(A),(B).

51) 19 U.S.C. §§ 1516a(1),(2); 이해당사자는 반덤핑절차에 있어 상무부 및 USITC의 판정이 연방관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의 근거가 된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다투는 소환장과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I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정이 소송기록상의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반덤핑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위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sup>54)</sup> 환언하자면, 상무부와 ITC의 판정은 반덤핑법령에 의거해야할 뿐만 아니라<sup>55)</sup> 소송기록상의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뒷받침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sup>56)</sup>

국제무역법원의 최종판결에 대하여<sup>57)</sup> 패소당사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sup>58)</sup> 해당법원은 국제무역법원에서 판결된 다양한 제소원인의 사례들을 다루고 있으며,<sup>59)</sup> 항소된 사례들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sup>60)</sup>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반덤핑판정에 적용한 규정들에 대하여 적절한 해석을 해야 한다.<sup>61)</sup> 따라서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검토함에 있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사건의 처음부터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고,<sup>62)</sup> 사용된 기준들을 다시 적용해야한다.<sup>63)</sup> 그러므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심리를 하는 동안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검토하지만, 심리이후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국제무역법원의 판결과 상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sup>64)</sup> 뿐만 아니라 의회(Congress)가 본안과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법령을 적용했던 상무부의 해석을 수용하여야 한다.<sup>65)</sup>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최종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52) Bryan A. Edens, "Substantial Evidence in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Meaningful Judicial Review of Antidumping Actions or Perpetuation of the YO-YO Effect?", *Cardozo Public Law, Policy and Ethics Journal*, 6 *Cardozo Pub. L. Pol'y & Ethics J.* 431, Spring 2008, p.450.

53) *Baoding Yude Chemical Industry v. United States*, 170 F. Supp.2d 1335, at 1340-1341 (2001).

54) 19 U.S.C. § 1516a(b)(1)(B).; *NTN Bearing*, 186 F.Supp.2d 1257, at 1263 (2002).; *Asociation De Productores De Salmon Y Trucha De Chile AG v. United States Intern. Trade Com'n.*, 180 F.Supp.2d 1360, at 1369 (2002).

55) 19 U.S.C. § 1516a(b)(1)(B)

56) 19 U.S.C. § 1516a(b)(1)(B)(i). "in an action brought under paragraph (2) of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to be unsupported by substantial evidence on the record, or otherwise not in accordance with law."

57) 여기에서의 판결은 국제무역법원이 본안에 대한 소송을 끝내고 판결의 집행만을 남게 되었을 때 비로소 "중국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즉 최종판결의 의미는 국제무역법원이 상무부나 USITC의 판정을 확정하는 경우이다. 만약 국제무역법원이 상무부나 USITC의 판정을 환송시킨 경우, 동 법원의 판결은 양 기관이 당해 환송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중국적인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Cabot v. United States*, 788 F.2d 1539, at 1539 (1986).; *McLean v. Department of Treasury*, 2007 WL 4125032, \*1 (2007).; *Hyatt v. Dudas*, 492 F.3d 1365, at 1368, (2007).; 고준성 외7명, 법무부, 1996, p.393.

58) 28 U.S.C. § 1295(a)(5).

59) Munford Page Hall, II and Michael S. Lee, "A Review of Recent Decisions of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57 *AMULR* 1145, April 2008, pp.1145-1146. ; Terence P. Stewart and Elizabeth J. Drake, "Reliance on Decisions of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in Trade and Customs Litigation",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8 *GEOJIL* 177, Fall 2006, p.177.

60) 28 U.S.C. § 1295(a)(5).;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f an appeal from a final decision of the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61) *Camargo v. United States*, 200 F.3d 771, at 773 (1999).; *Comex v. United States*, 133 F.3d 897, at 900 (1998).

62) *Fag Kugelfischer Georg Schafer AG v. United States*, 332 F.3d 1370, at 1372 (2003.).

63) *Yangcheng Baolong Biochemical Prods. Co. v. United States*, 337 F.3d 1332, at 1333 (2003).; *Comex*, 133 F.3d 897, at 899-900 (1998).; Terence P. Stewart and Elizabeth J. Drake, *op. cit.*, p.184.

64) Bryan A. Edens, *op. cit.*, p.431.; *Corus Staal BV v. Department of Commerce*, 395 F.3d 1343, at 1346 (2005.).

65) *Fujitsu General v. United States*, 88 F.3d 1034, at 1038 (1996).

### III. 연방대법원 사례분석(*Eurodif* 사건)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 반덤핑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에서 다른 사건으로 반덤핑법의 적용에 있어 기본이 되는 “상품”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해석과 그 입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66)</sup>

#### 1. 쟁점 및 적용조항

*Eurodif*<sup>67)</sup>사례의 쟁점은 미국내 발전회사들이 저농축우라늄(Low Enriched Uranium)을 획득하기 위한 계약형태 중 SWU(Separate Work Unit)계약으로 저농축우라늄을 수입하는 경우, 반덤핑법이 적용되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의 반덤핑법은 미국 내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외국상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부과를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SWU계약이 서비스가 아닌 상품의 판매인지 여부이다.<sup>68)</sup> SWU계약이 ‘상품’의 판매인 경우 반덤핑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며, 적용조항 19 U.S.C. §167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69)</sup>

- (1) 상무부가 동종의 외국상품이 공정가격(fair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
- (2) ITC가 다음을 판정-
  - (A) 미국 산업이 (i)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ii)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위협을 받고

66) *United States v. Eurodif*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 하급심 판결 및 당사자 주장에 대한 내용은, 하충룡 외1명, “미국반덤핑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 pp.143-162을 참조바라며, 본 연구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중점을 두었음.

67) *Eurodif*는 프랑스의 농축회사로 AREVA NC가 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으며, AREVA NC는 AREVA S.A.의 전역출자회사이다. 또한 AREVA S.A.의 주식은 84%가 직·간접적으로 프랑스 정부의 소유이다. *Eurodif, Brief for petitioners USEC*, 2008WL27940515, Jul. 16, 2008. p.8.

68) *Eurodif*, 129 S.Ct. 878, at 886-887 (U.S. 2009).

69) 19 U.S.C. § 1673. “If

- (1)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etermines that a class or kin of foreign merchandise or being, or is likely to be, sold in United States at less than its fair values, and
- (2) the Commission determines that-
  - (A) an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 (i) is materially injured, or
    - (ii) is threatened with material injury, or
  - (B)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is materially retarded, by reason of imports of that merchandise or by reason of sales (or the likelihood of sales) of the merchandise for importation, then there shall be imposed upon such merchandise an antidumping duty, in addition to any other duty imposed, in an amount equal to the amount by which the normal value exceeds the export price (or the constructed export price) for the merchandise...”

있는지

(B) 미국 산업의 형성이 실질적으로 저해되는지.

덤핑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이후 그러한 상품에 반덤핑관세, 추가로 기타 관세는 당해 제품의 수출가격(혹은 구성수출가격)을 초과한 정상가격의 차액 즉, 덤핑마진과 동일한 금액을 부과한다.

## 2. 사실관계 및 하급심 판결

미국의 원자력 발전회사<sup>70)</sup>는 전력을 생성하기 위한 연료인 저농축우라늄을 다음의 계약들 중 하나를 통하여 획득한다; (1) 농축우라늄생산품(Enriched Uranium Product)계약은 미국발전회사가 외국농축업자에게 완성된 생산품에 대금(현금정가)을 지급하고 저농축우라늄을 구매하는 것이다. (2) SWU계약은 미국발전회사가 외국농축업자에게 미농축우라늄을 공급하고, 외국농축업자에게 미농축우라늄을 농축한 부가가치만큼의 가액을 지급하고 농축의 결과로 생성된 저농축우라늄을 획득하는 것이다.<sup>71)</sup>

양 당사자 모두 ‘농축우라늄생산품’계약으로 저농축우라늄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반덤핑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SWU계약으로 저농축우라늄을 구매하는 경우에 반덤핑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서로 상충된 주장을 개진하였다.<sup>72)</sup> 즉, Eurodif는 ‘농축우라늄생산품계약은 저농축우라늄의 판매를 위한 것이지만, SWU계약은 우라늄농축서비스이므로 19 U.S.C. § 1673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sup>73)</sup>

상무부는 2000년 12월 조사개시에 착수하여,<sup>74)</sup> 2001년 12월 최종판정에서 덤핑공정판정을 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sup>75)</sup> 즉 상무부는 SWU계약이 서비스가 아닌 저농축우라늄의

70) 사례의 당사자인 USEC는 미국내에서 유일한 우라늄농축 가공공장이다. USEC민영화법(42 U.S.C. § 2297(h))에 의거하여 정부가 민영화를 승인하였으나 계속해서 동일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연방기업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사례에서는 USEC 및 해당기업의 자회사를 총칭한다. *Eurodif, Brief for petitioners USEC, 2008WL27940515*, Jul. 16, 2008. p.7.

71) *Eurodif*, 411 F.3d 1355, at 1357 (2005).

72) *Low Enriched Uranium from France*, 66 Fed. Reg. 36,744 (2001).

73) *Id.*, 66 Fed. Reg. 65882-65883 (2001).

74) *Low Enriched Uranium From 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66 Fed. Reg. 1080 (2001).

75) 상무부는 영국 및 독일, 네델란드에서 수입해 온 저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공정가격 이하로 수입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하였다. *Low Enriched Uranium from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the Netherlands, Ibid.*, 65886. 뿐만 아니라 상무부는 SWU계약과 관련하여 이전된 저농축우라늄이 그 효과 면에서 “요금(tolling)”규정의 견지의 “판매”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하였다. 특히 “요금(tolling)규정”은 제품의 제조공정서비스를 제공(판매)하거나 원자재를 공급하는 하도급업자가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관련판매도 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업자나 생산자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무부는 해당규정을 상품이 먼저 제조업자에 의해 판매되고 난 다음 (아무런 변형 없이) 수출업자에 의해 재판매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at 65880 하지만 하도급업자의 취급에 관한 규정은 2008년 철회되었다. 73 Fed. Reg. 16517 (2008).

판매라고 판정함에 있어 해당거래의 몇 가지 특징에 주목했다. 첫째, 농축공정은 농축가액의 약 60%를 차지하며 공급우라늄의 “실질적인 변형”작업이기 때문에, 농축공정은 저농축우라늄의 “기본성질”을 형성한다. 둘째, 농축업자들이 농축공정의 전반을 완전히 통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 천연우라늄의 사용량 또한 통제한다. 셋째, 발전회사 자체로는 저농축우라늄의 제조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제품의 단독 구매자이다. 또한 2002년 2월 ITC도 피해에 대하여 최종긍정판정을 하였다.<sup>76)</sup>

*Eurodif*는 상무부의 최종판정과 함께 국제무역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였다.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의 판정에 대하여 반송명령을 하였으나, 상무부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동법원은 상무부의 판정에, 어떠한 실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해당 판정을 기각하였다.<sup>77)</sup>

*USEC*는 국제무역법원의 최종판결에 대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무역법원의 판결과 같은 관점에서 본안에 접근하였다. 또한 이전 *Florida Power & Light Co.* 사건에서 SWU계약이 소유권의 처분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계약이라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수용하였다.<sup>78)</sup> 연방순회항소법원은 SWU계약이 서비스계약 혹은 상품판매계약의 범주라고 “깔끔하게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sup>79)</sup> 이에 상무부 및 *USEC*는 연방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 3. 연방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은 해당사안의 거래가 서비스라기보다는 상품의 판매라고 취한 상무부의 입장은 19 U.S.C. §1673에 허용할 수 있는 해석이므로, SWU계약에 반덤핑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1677(1)에서 먼저 상무부의 판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무부의 해석은 법률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며 본 법원의 의견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사건을 반송하였다.<sup>80)</sup>

76) *Low Enriched Uranium from 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Int'l Trade Comm'n*, Pub. No. 3486, (Feb. 2002); [http://hotdocs.usitc.gov/docs/pubs/701\\_731/pub3486.pdf](http://hotdocs.usitc.gov/docs/pubs/701_731/pub3486.pdf)

77) 농축업자들이 공급우라늄 및 최종 농축된 생산품의 소유권을 어떻게 획득하는지에 대한 실체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USEC v. United States*, 281 F.Supp.2d 1334, at 1325-1340. (2003).

78) *Florida Power & Light v. United States*, 307 F.3d 1364, at 1373 (2002).

79) *Eurodif*, 411 F.3d 1355, at 1362-1364 (2005). 이후 국제무역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상무부에게 장래의 저농축우라늄 통관과 관련하여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를 다시 확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덤핑관세 산정에서 SWU계약에 의한 이전의 저농축우라늄 통관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하였다. *Eurodif*, 431 F. Supp. 2d 1351, at 1354-1355 (2006); *Eurodif*, 442 F. Supp. 2d 1367, at 1367 (2006).;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무부는 또다시 장래의 저농축우라늄 통관과 관련하여 항소하였으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당항소를 기각하였다. *Eurodif*, 506 F.3d 1051 (2007).

80) *Eurodif*, 129 S.Ct. 878, at 880-890 (U.S. 2009).

이하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근거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19 U.S.C. § 1673’은 현금구매에만 적용되지 않음

먼저 “19 U.S.C. § 1673이 저농축우라늄의 거래를 현금 정가구매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상무부의 해석이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 발전회사가 제공한 것과 다른 공급우라늄으로 저농축우라늄이 생산되어질 수도 있는 거래가 반덤핑법에서 명백히 제외되는지 여부이다. 19 U.S.C. § 1673이 서비스가 아닌 상품의 판매에 적용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저농축우라늄을 완전한 현금 정가구매(cash-only sale)로 해야만 동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바로 이러한 상황은 법원이 법령의 범위를 정한 행정기관의 결정을 검토하는 것이다.<sup>81)</sup> 상무부가 현금 정가구매인 농축우라늄생산품계약과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SWU계약을 동일하게 판단하여, 19 U.S.C. § 1673에 의거한 상품의 판매로 해당거래를 취급한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sup>82)</sup>

상품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상무부의 입장은 “반덤핑관세의 효과를 보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말해, 농축우라늄생산품계약을 통해 현금 정가구매로 수입된 저농축우라늄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 19 U.S.C. § 1673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동일한 피해가 SWU계약일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가정해 보자. 농축우라늄생산품계약으로도 하나의 계약은 미농축우라늄을 사고 다른 계약은 이를 농축시키는 형태가 되면, 거래를 두 번으로 나눔으로써 SWU계약과 같은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런 경우 많은 종류의 상품에 대한 계약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해당계약은 반덤핑관세를 피해갈 수 있다. 이러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하여 상무부가 SWU계약을 상품의 판매로 취급함으로써 매우 합리적인 결과를 갖게 한다.<sup>83)</sup>

### 2) 경제적 현실을 반영함

다음으로 공법은 사법의제(private fiction)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외국농축업자가 발전회사에서 제공한 ‘바로 그 미농축우라늄’을 농축하여 생산된 저농축우라늄을 반환한다는 법적의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은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실제 SWU계약을 ‘서비스’판매를 위한 것으로 합의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계약상

81) 즉, 상무부가 상품의 범위가 결정하고 나면 법원은 법령에 대한 상무부의 해석이 합리적인지 여부만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82) *Eurodif*, 129 S.Ct. 878, at 881-889 (U.S. 2009).

83) *Eurodif*, *Id.*, at 889-890 (U.S. 2009).

조건이 어떠한 의미이든, 반덤핑규정 및 관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형식보다는 ‘경제적 현실 (economic reality)’에 중점”을<sup>84)</sup> 둔 상무부의 해석은 해당사안을 잘 해결한 것이다.<sup>85)</sup>

또한 상무부는 19 U.S.C. § 1673이 저농축우라늄의 구매와 미농축우라늄을 공급하는 “혼합 지급”의 거래를 명백히 배제시키고 있는지를 판정하여야 한다.<sup>86)</sup> 이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어떤 재료가 명백한 차이를 보이면서 일부는 서비스판매로, 또 일부는 상품의 판매가 되는 것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에는 혼합지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87)</sup> 즉, 혼합지급을 하더라도 상품의 판매에만 반덤핑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사안이 복잡해질수록 불분명해지며, 이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SWU계약이 서비스의 분류나 상품의 분류로 양분화하기가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다.<sup>88)</sup> 이처럼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행정기관에게 법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즉, 행정기관인 상무부가 반덤핑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바로 그 상황’이며, 결정된 상품의 범위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상무부의 해석이 합리적인지 여부만을 보아야 한다.<sup>89)</sup>

#### IV. 미국반덤핑법 적용을 위한 상품의 범위

반덤핑법이 서비스가 아닌 상품의 판매에 적용된다는 것은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United States v. Eurodif* 사건의 쟁점인 SWU계약이 반덤핑법의 적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 법 어디에도 정의되고 있지 아니한 “상품”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판결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들을 포함하여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상품의 범위 및 그 해석기준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84) *Tcherepnin v. Knight*, 389 U.S. 332, at 336 (1967).; *Frank Lyon Co. v. United States*, 435 U.S. 561, at 573 (1973)에서 “관세(taxation)분야에서 행정기관 및 법원은 사안의 내용과 현실에 맞게 논의 하여야 하며 공식서면문서에 엄격히 구속되지 않는다.”

85) *Eurodif*, 129 S.Ct. 878, at 886-887 (U.S. 2009)

86) 또한 19 U.S.C. § 1673을 적용하기 요건으로 ‘권리의 이전’을 명백히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87) 연방대법원은 더러운 옷을 세탁소로 가지고 간 고객은, 깨끗한 새로운 티셔츠가 아닌 ‘크리닝 서비스’를 받은 것인 반면, 반도체상품가공업체에 원료와 현금을 제공한 고객은 제조서비스보다는 컴퓨터칩, 즉 상품을 구매한 것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88) *Eurodif*, 411 F.3d 1355, at 1364 (2005).

89) *Eurodif*, 129 S.Ct. 878, at 888-889 (U.S. 2009).

## 1. 상품(Merchandise or Goods)의 판매에 대한 정의

앞의 논의를 살펴보면 SWU계약을 통한 거래가 ‘상품의 판매’이므로 반덤핑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분쟁은 필요가 없을 듯하다. 하지만 상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개념에 대한 정의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미국 반덤핑법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merchandise”은, 사전적으로 매매에 관여한 것으로 이동 가능한 목적물을 A가 B에게 구매 혹은 판매되는 것으로, 특히 상인이 다루는 제품의 교환이나 물리적 이동에 의한 교환의 목적물을 말한다. 즉, 상업적 상품(goods), 제품(commodities) 및 무역의 대상을 일컫는다.<sup>90)</sup> 사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후술할 goods와 merchandise는 혼용하여도 무방하므로, 상품(goods)을 정의하고 있는 통일상법전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sup>91)</sup>

미국에서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보통법(common law)과 통일상법전에서 찾을 수 있지만, 물품매매계약은 통일상법전 제2편의 지배를 받고 있다.<sup>92)</sup> 통일상법전에 따른 상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물품이란 매매계약체결 시에 지급되는 금전, 투자증권, 그리고 소송중의 물건을 제외하고 특별히 제작된 것을 포함하는 모든 이동 가능한 사물을 의미한다. 또한 물품에는 태어나지 않은 동물, 성장 중인 작물, 부동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상품에 관한 조항<sup>93)</sup>에 나타나 있는 여타의 부동산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sup>94)</sup>

또한 상품(goods)과 서비스가 동시에 매매의 목적물이 되는 경우 즉, 융합계약<sup>95)</sup>으로 불리는 계약에서는 당해 계약의 주된 목적(predominant purpose)에 따라 통일상법전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sup>96)</sup> 이번 반덤핑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쟁점은 “상품인가? 서비스인가?”이다. 기술의 발달 및 거래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으로 인해, 반덤핑법과 같은 통상법 적용에 있어 불명확성과 복잡성으로 이어 질 뿐만 아니라,<sup>97)</sup> 거래형태를 상품 혹은 서비스로 명백히 양분

90) Black's Law Dictionary (8th ed.) 2004. “merchandise” 해당 정의에서 부동산, 선적,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물 및 금전, 주식, 보증금, 어음 및 기타 실질상품가치의 척도를 대표하는 것은 제외된다.

91) 실제로 당사자들 및 법원에서도 이 두 단어를 번갈아 쓰고 있으므로 두 단어를 동일한 단어로 취급한다. 예로 411 F.3d 1355, at 1364 에서도 “sale of goods”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merchandise와 goods를 나눌 만한 실익은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미국과 타국의 상품의 거래에는 반덤핑법이 적용되나 미국내 상품의 거래에는 통일상법전이 적용되므로, 통일상법전의 정의를 살펴보는 것은 반덤핑법의 상품에 대한 정의를 위해서도 유용할 것이다.

92) U.C.C. § 2-102(적용범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편(미국통일상법전 제2편)은 물품에 관한 거래에 적용된다.

93) U.C.C. § 2-107(부동산으로부터 분리된 물품; 등기). (1) 광물 등(석유나 가스를 포함) 부동산으로부터 제외된 구조 또는 자재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에 의하여 그것들이 분리되는 경우에 본편의 물품매매계약이지만, 분리되기까지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서 유효하지 않고 매매계약으로서 유효하다.

94) U.C.C. § 2-105(1).

95) hybrid contract 혹은 mixed contract, 혼합계약이라고도 칭함.

96) 미국법원의 다수는 주된 목적에 따른 통일상법전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일부법원에서는 당사자 간의 분쟁의 핵심이 상품인가 아니면 서비스인지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Lee Kissman, “Revised Article 2 and Mixed Goods/ Information Transactions: Implications for Courts”, *Santa Clara Law Review*, 44 SANCLR 561, 2004, pp.571-572.

97) 채훈 외, 전계서, p.102.

하는 것이 힘들어 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간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융합계약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에서도 반덤핑법과 같은 규제적인 법령에서 사용되는 ‘상품의 판매’라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sup>98)</sup> 하지만 국제교역을 다루는 여러 법률들은 ‘상품의 판매’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로서 이해하고 판결하여 왔다.<sup>99)</sup> 뿐만 아니라, 특정 용어나 문구의 의미는 오히려 처해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해석될 수도 있다.<sup>100)</sup> 즉, 반덤핑법에 상품이 정의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범위가 적어도 통일상법전 보다 광범위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의회는 미국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입에 대하여 반덤핑 법을 적용하도록 시행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101)</sup> 즉, 상품의 판매가 아닌 거래에 대하여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sup>102)</sup> 또한 의회는 거래의 구조와는 관련 없이 그 효과가 판매와 동일하다면 반덤핑법의 목적에 맞는 거래로 동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sup>103)</sup> *Gray v. Powell* 사건에서 상품의 판매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핵심적인 요소로 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sup>104)</sup> 따라서 “상품의 판매”를 해석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점은 전통적 의미에서 소유권 및 권원의 이전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발생한 거래의 효과가 판매와 동일한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 2. 상품(Merchandise)의 범위와 해석기준

법령에 용어정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무부는 *Chevron*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에 대한 해석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sup>105)</sup> 이에 상무부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하여

98) *NSK. v. United States*, 115. F.3d 965, at 975 (1997) 해당법원에서는 “상품의 판매”라는 용어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이용한 정의로 해결하였다.

99) *Enercon GmbH v. International Trade Comm'n.*, 151 F.3d 1376, at 1381-1382 (1998) 사례에서 “상품의 판매”를 법률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의회가 통상적인 의미로 이를 해석할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VWP of Am., Inc. v. United States*, 175 F.3d 1327, at 1339 (1999)에서 판매는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대가로 소유권의 이전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상품의 판매”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다고 했다.

100) *National Ass'n of Home Builders v. Defenders of Wildlife*, 127 S. Ct. 2518, at 2534 (2007).

101) 19 U.S.C. § 1673.

102) 예를 들어 *J.H. Cottman & Co* 사례에서 법원은 반덤핑법에서 상품의 판매의 통상적인 의미를 적용함에 있어 ‘수송’은 상품의 판매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진다고 하였으며, *J.H. Cottman & Co. v. United States*, 20 C.C.P.A. 344, at 356 (1932). 무상건본은 반덤핑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NSK*, 115 F.3d 965, at 974 (1997).

103) 1984 U.S.C.C.A.N. 5127, 5138, H.R. Rep. No. 98-725, p.11 (1984).; 특히 임대차거래의 경우, 임대차거래가 소유권의 이전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품의 판매가 아니라고 하여 반덤핑관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막고자 상품의 판매범위를 한 층 확대 시켰다. 19 U.S.C. § 1677(19)(F).

104) *Gray v. Powell*, 314 U.S. 402, at 416 (1941).

105) *Chevron*, 467 U.S. 837, at 843 (1984).



일반적인 의미를 검토하였다.<sup>106)</sup> 일반적인 용어로 서비스는 보통 법률이나 의료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 혹은 정비, 수리 및 기타 무형의 원조와 같은 활동을 일컫는다.<sup>107)</sup> 사건의 본안인 SWU계약은 농축우라늄의 제조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품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형의 상품이 되는 것이다. 즉, 반덤핑조사에서 상무부는 저농축우라늄이 해당거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조계약을 통하여 생산된 수입상품이므로 반덤핑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정했다.<sup>108)</sup> 구매자가 주요 생산공정과 관련한 계약을 하고 해당공정으로 물품에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켜 완전히 상이한 생산품이 나오므로, 이러한 제조공정<sup>109)</sup>은 “서비스”라고 할 수 없으며 반덤핑법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이라 할 수 있다.<sup>110)</sup> 또한 법원은 *Chevron* 원칙에 따라, 이러한 상무부의 해석이 반덤핑법에 부합되는지만을 살펴보면 되는 것이다.

한편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반덤핑법상 ‘상품의 판매’에 대한 용어정의의 부재는 상무부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국내생산자들은 현재의 덤핑 및 피해를 판정할 때에는 긍정판정을 위하여 상품의 범위가 더욱 좁아지길 원하지만 장래에 가능성 있는 경쟁업자들은 그 범위가 더욱 광범위해 지길 원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sup>111)</sup> 또한 어떤 상품이 반덤핑관세명령의 대상 즉, 반덤핑법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화 되는 것은 해당 법이 상무부의 판정이 대상물품을 기술함에 있어 일반용어(*general terms*)로 작성되는 경우 많기 때문이다.<sup>112)</sup>

대부분 반덤핑관세 조사는 미국산업을 대신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청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상무부가 청원에 대한 요건들이 충족되었다고 판정한다면, 청원한 상품의 범위가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sup>113)</sup> 보통 상품의 범위에 대한 상무부의 결정은 청원시 신청인들이 제출한 범위를 반영하지만,<sup>114)</sup> 상무부는 적절한 상품의 범위

106) *Low Enriched Uranium From France*, 66 Fed. Reg. 65,887, 65,881 (2001).

107) *Black's Law Dictionary* (8th ed. 2004), Service.; 한편, 서비스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로 국제무역투자법(*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ct*)에서, 의회는 미국대표부가 서비스의 국제무역정책을 협력하고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형의 상품이 아닌 경제적 활동”으로 규정하였으며, 서비스의 예로 बैंकिंग, 보험, 운송, 우편 및 배달 서비스, 통신과 데이터처리, 도·소매 교역, 광고, 회계, 건설,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경영 컨설팅, 부동산 및 전문적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교육, 건강관리 및 여행과 같은 활동으로 나열하고 있다. 19 U.S.C. § 2114b(5).

108) *Low Enriched Uranium From France*, 66 Fed. Reg. 65,887, 65,881 (2001).

109) 미 의회가 도하라운드를 위하여 규정한 서비스의 정의를 살펴보면 “서비스”는 제조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채훈 외, 전거서, p.103.

110) *Low Enriched Uranium From France*, 66 Fed. Reg. 65,887, 65,881 (2001).

111) Robert Mordhorst,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The Scope of Antidumping/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Issue”, *George Mason University Law Review*, 9 *GMULP* 147, Winter 1986, p.149.

112) 19 C.F.R. 351.225(a). 상무부는 조사대상 범위 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에만 기초하여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서에만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하여 일반적으로 1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린다. 19 C.F.R. 351.225. §(c)(2), §(f)(5). (C.F.R.은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약자이다.)

113) 19 U.S.C. § 1673a.

를 결정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신청인들과는 상이하게 범위를 확정할 수도 있다.<sup>115)</sup>

관행적으로 어떤 제품이 반덤핑법에 포함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상무부의 주요 근거는 조사신청 당시의 ‘상품의 명세’이며, 추가로 기초조사 및 ITC 결정에서 사용된 명세도 검토한다.<sup>116)</sup> 하지만 특정제품이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상무부는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한다.<sup>117)</sup>

- (1) 청원, 기초조사 및 상무부와 ITC의 판정에서<sup>118)</sup> 포함된 상품의 명세
- (2) (1)항의 기준으로 결정되지 아니한다면, 상무부는 추가로 다음의 요소를 검토한다:
  - (i) 상품의 물리적 특성(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ii) 최종 구매자의 기대(The expectations of the ultimate purchasers); (iii) 해당 상품의 최종용도 (The ultimate use of the product); (iv) 상품이 판매되는 교역경로(The channels of trade in which the product is sold); (v) 상품이 광고되고 전시되는 방법(The manner in which the product is advertised and displayed).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요소들이 동일하게 중요한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사안에서 상품의 최종용도가 교역경로보다 더 중요한가 하는 등과 같은 의문점을 갖게 하며, 이러한 사안들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각 사안별로 요소들이 유동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sup>119)</sup> 이는 상무부가 특정상품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V. 결 론

미국 반덤핑법은 제정된 이래, 변함없이 불공정한 외국상품의 판매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

114) 신청인 및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해당상품이 반덤핑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첫째, 해당상품이 반덤핑법의 적용 혹은 제외된다는 결론에 대한 이유를 요약 둘째, 모든 적용가능한 법령 셋째, 자신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19 C.F.R. 351.225. §(c)(1)(ii).

115) Alan F. Holmer, “U.S. Trade Law and Policy Series #9: The Scope of ‘Class Or Kind Of Merchandise’ i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Cases”, *International Lawyer*, 10 INTLLAW 1015, Summer 1986, p.1016.

116) Robert Mordhorst, *op. cit.*, p.151.

117) 19 C.F.R. 351.225(k). 이러한 요소들은 *Kyowa Gas Chemical Industry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처음으로 정립되었다. 7 Ct. Int’l Trade 138, at 311 (1984).

118) 참고로 ITC는 피해를 판정함에 있어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국내산업의 범위는 국내동종상품으로 정의될 수 있다. 19 U.S.C. § 1677(4) ITC가 동종상품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은 (1)물리적 특성과 용도; (2)대체성; (3)유통경로; (4)상품에 대한 고객과 생산자의 인식; (5)일반적 제조설비 및 생산과정과 생산근로자; (6)(심사 대상으로 적절하다면) 가격. [ia.ita.doc.gov/pcp/pcp-likeproduct.html](http://ia.ita.doc.gov/pcp/pcp-likeproduct.html)

119) Robert Mordhorst, *op. cit.*, p.151.

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반덤핑법을 제정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목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덤핑법은 국내법으로 제정되지만 국제간에 발생하는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반덤핑법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만들어지는 제도이지만, 그 영향에 있어서는 국제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체계에 맞게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미국의 반덤핑규제는 그 영향력이 국제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된 피해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시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는 미국 반덤핑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반덤핑법과 관련하여서는 처음으로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였으며, 쟁점은 반덤핑법에 있어 대단히 본질적인 사안, 즉 “상품”의 범위이기 때문이다. 상품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방대법원은 첫째,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은 상품의 판매로 간주한 상무부의 판정을 지지하였으며 둘째, 계약의 형식보다는 경제적 현실에 비추어 본안에 접근하였다. 해당 판결로 인해 미국반덤핑법의 적용범위, 즉 상품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의가 없는 용어를 해석하는 상무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다.

미국반덤핑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의 판결이전 연구에서 반덤핑법의 입법의도가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며 “상품”의 정의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범위를 더욱 광범위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연방대법원이 상무부 및 USEC를 지지할 것으로 예측하였던 견해는,<sup>120)</sup> 연방대법원의 본안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미국 반덤핑법과 통일상법전의 적용요건은 “상품의 판매 혹은 매매”이다. 이를 부인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물론 본 논문에서 통일상법전의 목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해당 법에서는 명백히 “물품의 판매”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반덤핑법에서 원용하여 정의내리기가 쉬울 것이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통일상법전을 적용한 SWU계약관련 분쟁에서 *Eurodif* 사례와는 반대로 연방정부가 SWU계약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계약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sup>121)</sup> 이는 반덤핑법의 목적이 불공정한 수입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구체적인 법률은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지기 때문에 통일상법전이 적용되는 SWU계약의 거래보다 반덤핑법이 적용되는 SWU계약이 더 광범위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즉, 같은 상품에 대하여도 국내거래를 규율하는 통일상법전의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반면,<sup>122)</sup> 국제매매계약에서는 상품을 폭넓게 해석하는 이원적인

120) 하충룡 외1명, 전계논문, p.160.

121) *Barseback Kraft v. United States*, 36 Fed. Cl. 691, at 705 (1996), *aff'd*, 121 F.3d 1475 (1997).

122) UCC를 적용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상 “현재한” 부분이 상품(goods)과 관련된 것, 즉 계약의 주된 목적이 상품의 계약이어야 한다. *Lee Kissman, op. cit.*, p.571.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새로운 국제적 생산방식의 등장과 생산기지의 이동 등은 각국의 통상법의 적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명확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Eurodif*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교역량의 증대는 곧, 분쟁의 증대로 이어진다. 한-미 FTA가 타결된 이후, 이를 기점으로 양국 간 교역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반덤핑법의 해석 및 적용, 그리고 이번 사례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국통상법 및 통상정책의 연구를 필수적이다. 즉, 국가차원에서의 통상전문가 양성과 무역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 기업차원에서는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거래업체와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반덤핑법 상의 실제적·절차적 요건의 기본구조를 검토하고 해당 법의 목적과 모호한 법률용어의 해석기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반덤핑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인 “상품”의 범위 및 해석을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미국 반덤핑법의 본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 국내문헌

고준성 외,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6.12

고준성 외7명, 「미국통상법연구」, 법무부, 1996.

유기석, “한국기업이 유념하여야 할 미국 반덤핑이슈에 대한 고찰”, 「무역구제」, 무역위원회, 2007.4.

윤충원,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집문당, 2006.11.

채훈 외, 「각국 무역구제제도의 현재와 미래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무역투자연구원, 2007.7.

하충룡 외1명, “미국반덤핑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

### ◇ 외국문헌

Barnett, Mark A., and Khan, Sara., Reif, Kathy B., Shryock, Elizabeth., “28 U.S.C. § 1581(C)-Review By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of Antidumping & Countervailing Duty

- Determinations Issued By the Department of Commerce”,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0 *GEOJIL*153, Fall 2008.
- Black's Law Dictionary, *Black's Law Dictionary* (8th ed. 2004).
- Cameron and Crawford, “An Overview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Amendments: A New Protectionism?”, 20 *LAW & POLY INTL BUS.* 471, 1989.
- Committee Reports, “Report of The Nuclear Regulation Committee”, *Energy Law Journal*, 29 *ENERGYLJ* 789, 2008.
- Committee on Ways and Mean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VERVIEW AND COMPILATION OF U.S. TRADE STATUTES* Part II,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ne 2005.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ow the GATT Affects U.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Duty Policy*, The Congress of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Sept 1994.
- Edens, Bryan A. “Substantial Evidence in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Meaningful Judicial Review of Antidumping Actions or Perpetuation of the YO-YO Effect?”, *Cardozo Public Law, Policy and Ethics Journal*, 6 *Cardozo Pub. L. Pol’y & Ethics J.* 431, Spring 2008.
- Feld, Daniel 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Antidumping Act of 1921, preventing actual or threatened injury to domestic industry resulting from sale in United States of merchandise at prices lower than country of origin”, *American Law Reports ALR Federal*, 42 *A.L.R. Fed.* 821. 2009.
- Hall II, Munford Page and Lee, Michael S. “A Review of Recent Decisions of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57 *AMULR* 1145, April 2008.
- Holmer, Alan F., “U.S. Trade Law and Policy Series #9: The Scope of 'Class Or Kind Of Merchandise' i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Cases”, *International Lawyer*, 10 *INTLLAW* 1015, Summer 1986.
- Karnezis, Kristine Cordier.,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Chevron Deference“ to Administrative Action by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merican Law Reports ALR Federal* 2d, 3 *A.L.R. Fed.* 2d 25, 2009.
- Kissman, Lee., “Revised Article 2 and Mixed Goods/ Information Transactions: Implications for Courts”, *Santa Clara Law Review*, 44 *SANCLR* 561, 2004.
- Lease, Stephen., *Customs Duties, Corpus Juris Secundum*, June 2008, 25 *CJS CUSTOMSDUT* §§145-146.
- Lindsey, Brink. and Ikenson, Dan., “Antidumping 101; The Devilish Details of Unfair Trade Law”, *CATO Institute*, Nov. 2002.

Mordhorst, Robert,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The Scope of Antidumping/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Issue", *George Mason University Law Review*, 9 *GMULP* 147, Winter 1986.

Sidley Austin LLP, "Supreme Court to Hear Antidumping Case", *International Trade Update*, April 21, 2008.

Stewart, Terence P. and Drake, Elizabeth J., "Reliance on Decisions of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in Trade and Customs Litigation",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8 *GEOJIL* 177, Fall 2006.

◇ 관례사례

*Chevron, U.S.A., Inc. v. Nation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467 U.S 837, (1984).

*Eurodif S.A., v. United States*, 411 F.3d 1355, (2005).

*Eurodif S.A. v. United States*, 431 F. Supp. 2d 1351, (2006)

*Eurodif S.A. v. United States*, 442 F. Supp. 2d 1367, (2006).

*Eurodif S.A. v. United States*, 506 F.3d 1051, (2007).

*United States v. Eurodif*, 129 S.Ct. 878, (U.S. 2009).

*USEC Inc. v. United States*, 259 F.Supp.2d 1310, (2003).

◇ 관련법령

U.C.C.

U.S.C.

GATT Article VI

WTO Anti-dumping Agreement

관세법

◇ 웹사이트

ia.ita.doc.gov, 5 Mar., 2009.

[www.ktc.go.kr](http://www.ktc.go.kr), 25 Feb., 2009.

[www.westlaw.com](http://www.westlaw.com), 13 Aug., 2009.

[www.wto.org](http://www.wto.org), 3 Mar., 2009.

antidumping.kita.net, 25 Feb., 2009.